
2021년 (재)전남복지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

훈계 · 개선 요구

제 목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훈계대상자 경영지원팀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2019년 실적) 성과급 지급계획(경영지원팀-2268호 2020.12.23.)*에 따라 2020. 12. 24. 2019년도 성과급 144,746,790원을 ○○○ 등 총 45명에게 지급하였다.

* 평가배점: 업적평가(20%)와 근무실적평가(80%) 및 가·감점 반영

2. 관계법령

「전남복지재단 보수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지급은 경영실적평가 및 개인별 업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남도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전남복지재단 근무성적평정 내규」 제2조에 따르면 근무평정대상은 재단 전체 직원으로 하되,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사유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은 평정에서 제외하고, 평가등급은 최하위를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2020년(2019년 실적) 성과급 지급대상자 평가 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개인별 업적과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3개월 이상 근무했으나 중도 입·퇴사, 휴·복직한 직원의 업무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C’(최하위)등급으로 일괄 평가하는 것은 재단 근무성적평정 내규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표] “근무평정 내역 및 성과급 등급 내역('18 ~ '20)”과 같이 중도 입·퇴사자 및 휴·복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평정기간 중에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린 후 업무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평정대상자가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았다.

[표] 근무평정 내역 및 성과급 등급 내역('18 ~ '20년)

연도	성명	직급	근무개월	평정여부	사유	성과급 등급	비고
2019	○○○	연구직	4개월	미평정	중도퇴사	C	
2020	◇◇◇	연구직	5개월	미평정	중도퇴사	C	
	□□□	연구직	8개월	미평정	중도퇴사	C	
	△△△	연구직	11개월	미평정	중도휴직	C	

※ 자료: (재)전남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복지재단은 공정·투명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에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었으나, 감사일인 2021. 3. 12. 현재 까지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업무방식의 개선 등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복지재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 등의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복지재단은 위와 같이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휴직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중도 입·퇴사자와 휴·복직 직원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당연히 예전과 같이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그대로 평정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전남복지재단 근무성적평정 내규」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시, 중도 입·퇴사자와 휴·복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 및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 ② 이를 소홀히 한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이상업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주의 요구 · 통보

제 목 범죄 경력조회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은 「전남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경영지원팀 ○○○ 팀장(2급) 등 총 23명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전남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직원으로 신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복지재단 인사관리 내규」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직원의 징계를 별표 1호와 3호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신규 직원 채용 시 범죄사실 여부와 근무 직원들의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징계 및 채용 등 인사업무에 활용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경영지원팀)은 2018년부터 감사일인 2021. 3. 12. 현재까지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인가·허가, 서훈, 등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범죄경력조회¹⁾가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전남복지재단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직위해제사유, 음주운전 비위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중 전 직원(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경찰청 홈페이지 상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개인정보를 부동의 한 ㉠㉡㉢등 2명과 업무형편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한 20명을 제외한 21명은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복지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부직원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했을 우려가 있고, 소속 직원 중에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의 비위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복지재단(경영지원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 경력조회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업무 추진 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경찰청 홈페이지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연1회)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는 범죄경력 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범죄경력 회보서 또한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되며, 제출용은 금지되고 있음

전라남도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전남복지재단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남복지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전라남도과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관리 및 지원과 지역사회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전라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 한다)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복지재단은 직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복지재단 보수규정」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1. 예산집행 10대 원칙 ⑥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에 따르면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재단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연봉 외 부가급여(직급보조비 등)를 지급할 때에는 「출연기관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복지재단 보수규정」에 지급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경영지원팀)은 「복지재단 보수규정」 제20조에 직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만 둔 채, 감사일인 2021. 3. 12. 현재까지도 「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직위 및 직급을 정하였다는 사유로 지급 세부 기준을 「복지재단 보수규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재단은 직급보조비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고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표1] '복지재단 직급보조비 지출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명에게 60,377천 원의 직급보조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수탁기관인 서비스지원단과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직제 및 정원은 「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8조에 따라 별도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개 수탁기관의 정원 및 인사관리 내규는 2020. 9. 17. 에서야 제정되었다.

그런데 복지재단(서비스지원단, 이동지원센터)은 위 내규에 정원 및 직종별 구분만 규정²⁾되어있을 뿐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직급별 구분과 월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규 제정 이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임의로 기준을 정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명에게 27,910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복지재단(서비스지원단, 이동지원센터)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³⁾에 위반하여 총 20명에게 88,287 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1] 복지재단 직급보조비 지출 명세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출내역				
				지급대상	계	2020	2019	2018
총계				20	88,287,410	27,547,490	29,000,330	28,715,590
전남복지재단 소계				14	60,377,410	18,117,490	20,420,330	18,815,590
전남 복지 재단*	연구위원	공무원5급상당	250,000	1	9,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책임연구원	공무원6급상당	155,000	1	304,830	304,830	-	-

2)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사무직(센터장,사무“나”급,사무“다”급), 상담직으로 구분

전남지역사회서비스단의 경우 단장,사무“가”급(팀장), 사무“나”급, 사무“다”급, 사무“라”급으로 구분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서 직급보조비는 5급 상당 250,000원, 6급 상당 155,000원, 7급 상당 140,000원, 8·9급 상당 125,000원으로 규정(2020년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출내역				
				지급대상	계	2020	2019	2018
	선임연구원	공무원7급상당	140,000	2	8,060,990	1,866,660	3,014,330	3,180,000
	사무2급	공무원5급상당	250,000	1	1,750,000	1,750,000	-	-
	사무3급	공무원6급상당	155,000	2	10,633,500	336,000	3,553,500	3,720,000
	사무4급	공무원7급상당	140,000	2	9,892,500	3,360,000	3,352,500	3,180,000
	사무5급	공무원8급상당	125,000	3	12,806,430	4,500,000	4,500,000	3,806,430
	사무6급	공무원9급상당	125,000	2	7,929,160	3,000,000	3,000,000	1,929,160
수탁기관 소계				6	27,910,000	9,430,000	8,580,000	9,900,000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 단	사무가급 (팀장)	-	250,000 (19년까지 140천원)	1	6,360,000	1,680,000	1,680,000	3,000,000
	사무'다'급	-	125,000 (19년까지 100천원)	2	7,800,000	3,000,000	2,400,000	2,400,000
	사무'라'급	-	125,000	1	250,000	250,000	-	-
전남 광역 이동 지원 센터	사무직 (센터장)	-	250,000	1	9,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사무'다'급	-	125,000	1	4,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자료: 전남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퇴사자 제외)

2. 교육훈련비 지출 부적정

복지재단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는 각종 교육훈련과정 경비(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직원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 규정에 따른 대학원 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직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초빙된 외래교육 강사의 수당 지급 시, 교육훈련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체육대회, 직원 워크숍 등 직원 친목도모 또는 화합성 행사 등의 경비로는 교육훈련비를 집행에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경영지원팀)은 [표2] '교육훈련비 부적정 지원 명세'와 같이 2018년에는 재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현장 연수를 위해 개인당 35만 원씩 지원하였고, 12월에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숙식비 및 차량대여비, 여행자 보험, 체육관 임대료 지급을 위해 689만 원을 교육훈련비로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전세버스 대여료, 리조트 대금 등 595만 원을 교육훈련비로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표2] 전남복지재단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 명세

(단위: 원)

지원연도	지출일	지출항목	지원액	
계			17,734,280	
2018	2018-06-18	2018년 복지재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현장연수 경비 지원(1인당 35만원 13명)	4,550,000	복지재단
2018	2018-06-18	2018년 복지재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현장연수 경비 지원(센터장)	350,000	이동 지원센터
2018	2018-12-20	2018년 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6,888,400	복지재단
		2018년 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숙식비 및 차량 대여비	4,277,900	
		직원 워크숍 체육대회 물품구입 및 다과구입	1,345,520	
		워크숍 레크레이션 비용 지급	1,000,000	
		현수막 및 체육관 임대료	255,000	
		2018년 전남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여행자보험	9,980	

지원연도	지출일	지출항목	지원액	
2019	2019-12-13	2019년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5,945,880	복지재단
		리조트 대금	2,482,000	
		전세버스 대여료	1,100,000	
		레크리에이션 진행비	570,000	
		워크숍 식대	447,500	
		조천목도모 프로그램 진행비	440,000	
		다과 구입비	377,080	
		현수막 및 보드판 제작비	295,000	
		행사물품 구입비	222,100	
		워크숍 여행자보험 가입비	12,200	

※ 자료: (재)전남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3-1.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 여비 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재단 여비 규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단(이동지원센터)은 출장 후 여비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연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증빙서의 적정성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이동지원센터)은 22개 사·군센터 지역특수성 파악 및 업무연계 등의 사유로 총 55건의 근무지 외 출장여비 1,404천원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출장복명서 또는 운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표3] '출장여비 증빙 부적정 명세'와 같이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3] 출장여비(운임비) 증빙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출장일자	출장자			운임비	출장목적
	직	성 명	건		
계		10명	55	1,404,300	
2018	○○○	A	9	221,300	22개 사·군센터 지역특수성 파악 및 업무연계 등
2019			8	289,700	"
2020			8	128,000	"
2018	◇◇◇	B	5	96,800	"
2019			6	293,000	"
2020			2	27,200	"
2018	□□□	C	2	23,800	"
2018	□□□	D	1	8,800	"
2019			2	64,400	"
2020			1	14,200	"
2018	□□□	E	2	48,400	"
2019			1	16,900	"
2018	□□□	F	1	15,000	"
2019			1	23,100	"
2018	□□□	G	1	12,600	"
2019			1	22,800	"
2018	□□□	H	1	12,600	"
2019			1	24,100	"
2019	□□□	I	1	40,800	"
2019	□□□	J	1	20,800	"

※ 자료: (재)전남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2.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 및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되,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이동지원센터)은 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행사 관련 기념품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복지재단(이동지원센터)은 [표4]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명세”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 불가항목으로 규정한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에 23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복지재단(이동지원센터)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표4]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명세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액	비 고
계	2건	2,300,000	
2019-12-13	2019년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종사자 워크숍 기념품 제작(볼펜메모북)	1,200,000	
2018-12-13	2018년 전남광역아동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종사자 워크숍 기념품 제작(방향제)	1,100,000	

※ 자료: (재) 전남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복지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원장은

- ① 직급보조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재단 보수 규정」과 「재단 여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